

2019년도 부산광역시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

2019년도 부산광역시공무원 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3일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가. 선발예정인원

구 분			직렬(직류)	직급	선 예 정 인 원	학력 및 자격
총 계			30개 직렬		972명	
소 계			18개 직렬		911명	
제 1 회	공 개 경 쟁	행 정 직 군	행 정 직	9급	333명	· 제한 없음
			행 정 직 (장 애 인)	9급	32명	
			행 정 직 (저 소 득 총)	9급	20명	
			세 무 직	9급	53명	· 제한 없음
			세 무 직 (장 애 인)	9급	5명	
			사 회 복 지 직	9급	65명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사 회 복 지 직 (장 애 인)	9급	6명	
			사 회 복 지 직 (저 소 득 총)	9급	4명	
			전 산 직	9급	15명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전 산 직 (장 애 인)	9급	1명	
			사 서 직	9급	25명	· 1·2급 정사서, 준사서
			사 서 직 (장 애 인)	9급	1명	
			속 기 직	9급	1명	· 한글속기 3급 이상
			기 술 직 군	기 술 직 군	간 호 직	8급
	공 업 직 (일 반 기 계)	9급			33명	· 제한 없음
	공업직(일반기계-장애인)	9급			2명	
	공 업 직 (일 반 전 기)	9급			39명	
	공업직(일반전기-장애인)	9급			2명	
	공 업 직 (일 반 화 공)	9급			14명	
	농 업 직 (일 반 농 업)	9급			4명	· 제한 없음
	보 건 직	9급			15명	· 제한 없음
	환 경 직 (일 반 환 경)	9급			14명	· 제한 없음
	녹 지 직 (산 림 자 원)	9급			10명	· 제한 없음
	녹 지 직 (조 경)	9급	10명			

제2회	경 력 경 쟁	기술직·군	시 설 직 (도 시 계 획)	9급	3명	· 제한 없음		
			시 설 직 (일 반 토 목)	9급	41명			
			시설직(일반토목-장애인)	9급	2명			
			시 설 직 (건 축)	9급	29명			
			시 설 직 (건 축 - 장 애 인)	9급	2명			
			시 설 직 (지 적)	9급	20명	· 산업기사(지적) 이상		
			시 설 직 (지 적 - 장 애 인)	9급	1명			
			방 재 안 전 직	9급	10명	· 제한 없음		
			방송통신직(통 신 기 술)	9급	13명	· 제한 없음		
			해양수산직(일 반 수 산)	9급	2명	·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이상		
	해양수산직(일반선박)	9급	1명	·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이상, 5~6급 항해사기관사 이상				
	해양수산직(선박항해)	9급	3명	·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이상, 5~6급 항해사 이상				
	의료기술직(임상병리)	9급	5명	· 임상병리사				
	의 료 기 술 직 (치 위 생)	9급	2명	· 치과위생사				
	기술직		5급	9명	의사	※ 시험일정 등 별도 임용시험계획공고 예정(3월중)		
	소 계		12개 직렬		61명			
	경 력 경 쟁	공개경쟁	행정직·군	행 정 직	7급	15명	· 제한 없음	
				기술직·군	수 의 직	7급	8명	· 의사
					약 무 직 (약 무)	7급	2명	· 약사, 한약사
					시 설 직 (일 반 토 목)	7급	2명	· 제한 없음
시 설 직 (건 축)					7급	2명	· 제한 없음	
운 전 직					9급	14명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기술직·군			보 건 직		9급	1명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서 관련학과를 졸업(예정 포함)한 자로서 각급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거나, 2019.1.1. 현재 각급 대학 중퇴자로 해당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응시 희망자는 해당 학교에 2019.7.26.(금)까지 신청	
			공 업 직 (일 반 기 계)	9급	1명			
			공 업 직 (일 반 전 기)	9급	1명			
			시 설 직 (일 반 토 목)	9급	1명			
		시 설 직 (건 축)	9급	1명				
		연구직·군	학 예 연 구 직 (학 예 일 반 - 고 고 학)	연구사	1명	· 역사학, 고고학, 민속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을 전공한자로서 해당학위 석사이상을 취득한자		
			학 예 연 구 직 (미 술)	연구사	1명	·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자로서 해당학위 석사이상을 취득한자		
			보 건 중 연 구 직 (공 중 보 건)	연구사	3명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자로서 해당 학위 석사이상을 취득한자		
			수 의 연 구 의 직 (수 의)	연구사	1명	·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자로서 수의사 면허소지자		
			환 경 연 구 직 (환 경)	연구사	6명	·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자로서 해당 학위 석사이상을 취득한자		
해 양 수 산 연 구 직 (수 산 양 식)			연구사	1명	·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 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자로서 해당 학위 석사이상을 취득한자			

※ 근무지역 : 부산광역시 또는 16개 자치구·군, 주민센터

나. 공통 응시자격

○ 응시연령

- 7급 및 연구·지도사 : 20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 8급 이하 : 18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

○ 지역제한

2019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1. 2019년1월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
※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9년1월1일 이전까지 부산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 이어야 합니다.

○ 응시자격 중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직류는 해당 자격증(면허증) 또는 학위를 1개 이상 소지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시 자격증, 면허증,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증, 면허증, 학위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 응시자격 중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직류의 응시자 및 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 등 해당 증빙서류 제출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안내 하는 날짜에 제출합니다.

※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응시할 경우 향후 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결격 사유(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 4. 16.까지 적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개정에 따른 아래 사항은 2019. 4. 17.부터 적용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정,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다. 연구직 응시자격

-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이어야 합니다.
- 위 표와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관련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학교장추천서 포함)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학위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라. 고교졸업자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선발직류의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졸업(졸업예정)자로서 각급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거나 2019. 1. 1. 현재 각급 대학 중퇴자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이어야 하며, 응시연령은 18세 이상(2001. 12. 31.이전 출생자)이거나 고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2002.1~2월 출생) 17세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 학교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또는 응시자 지역제한 요건 충족자
- 관련학과라 함은 보건직은 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을 말하며, 일반토목직은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이고, 건축직은 건축(건축설비)이며, 일반기계직은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이고, 일반전기직은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와 관련되는 학과를 의미합니다.
※ 임용예정직렬과 관련되는 해당학과 여부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에 의한 학과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관련되는 학과일 경우에는 추천 학교장 명의의 확인이 필요함
- 응시희망자는 2019. 7. 26.(금)까지 해당학교로 신청해야 하고,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응시대상자도 원서접수 기간에 인터넷으로 반드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에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 접수는 할 수 없음)
- 필기시험 합격자는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이어야 합니다.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의 직렬(직류)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군수가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군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구·군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람

2. 시험과목

구분	직렬(직류)	직급	시 험 과 목
지방경찰청	행정직	7급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행정직	9급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사무직	9급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사회복지직	9급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전산직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서직	9급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속기직	9급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수의직	7급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지방경찰청	약무직(약무)	7급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약제학, 약전학, 보건행정학
	시설직(일반토목)	7급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시설직(건축)	7급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간호직	8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공업직(일반기계)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직(일반전기)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공업직(일반화학)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업직(일반농업)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녹지직(산림자원)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녹 지 직 (조 경)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보 건 직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환 경 직 (일 반 환 경)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 설 직 (도 시 계 획)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시 설 직 (일 반 토 목)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 설 직 (건 축)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시 설 직 (지 적)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방 재 안 전 직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방송통신직(통 신 기 술)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운 전 직	9급	필수(3) : 국어, 한국사,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제1종 제2종	기술직군	해양수산직(일 반 수 산)	9급	필수(3) : 수산일반, 수산생물, 수산경영
		해 양 수 산 직 (일 반 선 박)	9급	필수(3) : 물리, 기관일반, 선박일반
		해 양 수 산 직 (선 박 항 해)	9급	필수(3) : 물리, 선박일반, 항해
		의료기술직(임 상 병 리)	9급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의 료 기 술 직 (치 위 생)	9급	
		보 건 직	9급	필수(3) :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공 업 직 (일 반 기 계)	9급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 업 직 (일 반 전 기)	9급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시 설 직 (일 반 토 목)	9급	필수(3)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시 설 직 (건 축)	9급	필수(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연구직군	학 예 연 구 직 (학 예 일 반 - 고 고 학)	연구사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선택(1) : 박물관학, 한국고고학
		학 예 연 구 직 (미 술)	연구사	필수(2) : 문화사, 현대미술론 선택(1) : 한국미술사, 서양미술사
		보 건 연 구 직 (공 중 보 건)	연구사	필수(2) : 보건학, 역학 선택(1) : 환경보건학, 식품화학
		환 경 연 구 직 (환 경)	연구사	필수(2) : 환경공학, 환경화학 선택(1) :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수 의 연 구 직 (수 의)	연구사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해 양 수 산 연 구 직 (수 산 양 식)	연구사	필수(2) : 수산학개론, 수산양식학 선택(1) : 어병학, 수산생물학

☞ 출제범위 : 행정학개론에 지방행정 포함,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수학**은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I, 방재안전직류의 **재난관리론**은 자연재난, 사회재난(인적재난 포함), 위기관리 범위에서, **안전관리론**은 안전관리제도, 안전윤리 및 심리(취약계층안전 포함), 분야별 안전(교통, 시설, 생활, 소방, 식품, 테러대비 등) 포함

※ 2020년부터 사회, 과학, 수학 및 고졸(예정)자 경력경채시험 과목의 출제범위는 2015년 개정된 교육 과정이 적용됩니다.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행정, 세무, 사회복지, 사서, 속기직)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 적용

3.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4. 시험일정

구 분	접수기간 [취소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1회 임용시험 (공개·경력경쟁)	4. 1.(월)~4. 5.(금) [4. 1.(월)~4.10.(수)]	필기시험	5.24.(금)	6.15.(토)	7.19.(금)
		면접시험	7.19.(금)	8.19.(월)~8.30.(금)	9.11.(수)
제2회 임용시험 (공개·경력경쟁)	8. 5.(월)~8. 9.(금) [8. 5.(월)~8.14.(수)]	필기시험	9.20.(금)	10.12.(토)	11. 6.(수)
		면접시험	11.6.(수)	11.26.(화)~11.28.(목)	12.13.(금)

- 모든 시험일정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gosi.busan.go.kr>)에 공고합니다.
-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는 개별적으로도 합격을 통지합니다.
-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에 확인 가능)

5. 응시원서 접수안내(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안내

- 접수처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
 - ※ 접수 및 취소 문의 : 인터넷원서접수센터(☎1522-0660)
- 접수 시간 : 접수 기간 중 시작일 09:00 ~ 마감일 18:00(기간 중 24시 접수운영)
- 기타 : 응시수수료(8·9급 5,000원, 7급 및 연구·지도직 7,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 비용(휴대폰결제·카드결제·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나. 사진등록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형식)은 규격 3.5cm × 4.5cm, 해상도 100 DPI이상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사진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다.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마감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응시직렬을 변경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해야 함)
-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표 출력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안내하는 기간에 원서접수 사이트 (<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분실시 재출력 가능)
- 부산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중복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원서접수 전에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대상 및 범위, 신청 절차, 신청기간, 구비서류 등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양성평등임용 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7~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

- 인원수 계산은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 미달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7.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연구·지도직은 제외)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함

나. 의사상자 등 대상(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6조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사상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대상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점 적용)

※ 의사상자 등록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보건복지부 등에 확인하여야 함

다. ‘가’항과 ‘나’항이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

라.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채용계급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통신·정보처리분야	일반직6·7급, 연구사,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0.5%
	일반직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분야	일반직6급이하, 연구사,지도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舊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됨

○ 직군(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

- 행정직군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 렬	행 정 직	세 무 직	사회복지직
가산자격증	변호사,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 기술직군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은 가산제외)

구 분	7급,연구사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폐지·변경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됨.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원서 접수시부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원서접수사이트 (<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보호번호와 가산비율(10%, 5%) 입력, 의사상자 등 대상의 경우 의사상자 증서번호와 가산비율(5%, 3%) 입력
 -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리며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람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되며(최대 2개 인정),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의사상자 등 가산 대상자는 필기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의 평정은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정하고,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수”와 “미흡”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는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실시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하고,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하며,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9.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안정적 인력운영을 위해 공개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3년간, 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4년간 타 시·도 및 중앙부처로의 인사교류(전출)를 금지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고졸 경력경쟁 임용시험 응시자가 대학 재학이나 대학 졸업 학력(학점은행제 등 포함)이 드러난 경우 합격 또는 임용 취소됩니다(단, 2019년 1월 1일 이전 대학 중퇴자의 경우 응시 가능)
-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의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부산광역시가 자체 출제한 과목은 비공개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답안지·시험장소 공고 등에서 안내하는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에서 공개경쟁은 매 과목 과락(40점 미만)이 있을 경우, 경력경쟁은 매 과목 과락(40점 미만) 또는 전 과목 총점 평균이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도부터 수의직 7급 공개경쟁시험은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전환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gosi.busan.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인사담당관실 인재채용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1-888-1971~5)